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가단552111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한상구, 김중권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윤아

변론 종결2024. 8. 30.

판결 선고2024. 10.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334,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융자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C공사(제1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22. 1. 3.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2. 1. 3.부터 2025. 6. 7.까지, 계약금액 33,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경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1,440,000,000원(=공급가액 1,309,090,909원+부가가치세 130,909,091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22. 4. 11. 위 선급금의 보증을 위하여 E 주식회사와 피고로부터 각 아래와 같이 합계 1,440,000,000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내지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험가입금액/보증금액	970,000,000원(선급금의 약 67.3612%)	470,000,000원(선급금의 약 32.6388%)
보험기간/보증기간	2022. 4. 11. ~ 2023. 2. 21.	2022. 4. 11. ~ 2023. 2. 19.

라.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소외 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여 하도급 공사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130,909,091원 및 기성금으로 정산된 732,800,000원을 제외한 576,290,909원(= 선급금 1,440,000,000원 - 부가가치세 130,909,091원 - 기성금 732,8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위와 같은 보증사고 발생에 대하여 E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576,290,909원 중 E 주식회사의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388,195,960원(=576,290,909원×970,000,000원/1,440,000,000원, 10원 미만 반올림)을

2023. 8.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 직원으로서 위 건설현장의 대내외 공무를 담당한 F 및 G은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하고 이를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최종 작성된 2022. 11. 21.자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이 9,760,000원만 남아 있다며 9,760,000원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1	2022. 6. 16.	F	2022. 4. 30. 53,680,0002022. 5. 31. 61,600,000	354,720,000
2	2022. 7. 8.	상동2022. 6. 30. 67,760,000	286,960,0001) 위 잔여 보증금액 354,720,000원에서 2022년 6월 기성분 67,760,000원을 뺀 금액이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잔여 보증금액이 계산되었다.	
3	2022. 8. 9.	상동2022. 7. 31. 72,160,000	214,800,000	
4	2022. 9. 8.	상동2022. 8. 31. 61,600,000	153,200,000	
5	2022, 11. 21.	G	상동2022. 9. 30. 46,640,0002022. 10. 31. 96,800,000	9,76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 576,290,909원을 피고의 보증한도인 470,000,000원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388,195,960원, 피고로부터 9,7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78,334,949원(= 576,290,909원-388,195,960원 -9,760,000원)을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작성한 일련의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하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라 한다)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의 보증금액은 9,760,000원만 남아 있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 및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9,76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는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라는 제목 아래 "아래의 보증에 대한 보증이행이 완료하여 보증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그 내용으로 보증서 번호와 보증금액, 선급금액, 보증책임 일부가 소멸된 경우 소멸(정산)일과 소멸(정산)된 보증금액, 잔여보증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용도란에 "B공제조합 보증해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서식 내용에 부실 내지 부정기재(특히 보증책임 소멸일과 정산금액)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민·형사상)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의 작성자는 공사현장의 대내외 공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면서 그 사용인감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아래의 용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문제를 폐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팀명: H, 제출처: B공제조합, 용도: B공제조합 선급금지급보증 중간 보증해제용"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3) 이처럼 명백한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의 기재내용과 사용인감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면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 단순히 월별 기성에 따른 정산금액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속 직원은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월별 기성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착오가 있었다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은 처분문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즉, 소멸되는 보증금액과 잔여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보증을 해제함)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한 원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사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 유무는 보통인이 베풀어야 할 주의를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는 '보증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거나 '내용에 부실 내지 부정기재(특히 보증책임 소멸일과 정산금액)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 없음을 확인·증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용도도 피고 보증해제용'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인감도 보증해제용이므로, 이토록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서류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원고로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건설보증의 경우 1개 회사가 전부보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과 같이 2개 이상의 회사가 일부 금액씩을 보증하는 경우는 드문데다가,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 양식이 전부보증의 경우와 동일하였기 때문에 원고 직원이 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전부보증과 동일한 업무방식으로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한 사람은 이러한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담당 직원으로서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보증책임 면제효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은 5차례에 걸쳐 작성된 점, 담당직원은 현장소장의 결재까지 받아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에 보증해제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점, 원고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2개 이상의 회사가 일부보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착오에 의해 이 사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파라

1) 위 잔여 보증금액 354,720,000원에서 2022년 6월 기성분 67,760,000원을 뺀 금액이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잔여 보증금액이 계산되었다.